

인천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19가단234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노성환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민경식

변론 종결 2020. 9. 10.

판결 선고 2020.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4. 2. 2. 접수 제1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2,650,00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41,650,000원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과 사이에 8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장남이다.

나. 원고는 2004. 2.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내지 ④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4. 1. 2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9. 1. 18. D에게 이 사건 ① 토지를 83,3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2. 22. D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6. 19. E에게 이 사건 ② 토지를 42,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0. E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제기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 일부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원고와 원고 소송대리인 사이의 소송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법무법인 정세의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20. 6. 9. 원고가 법무법인 정세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F 등부 2020년제116호로

인증하여 제출하였고, 위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과 원고가 종전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의 진술인란에 수기로 기재된 원고의 이름은 모두 동일한 필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송위임장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행위를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원고가 원고 부부의 부양, 선조의 제사 봉행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 등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증여의 조건인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③, ④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①, ② 토지 매각대금 합계 125,300,000원의 1/2인 62,6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증여에 상대방담(민법 제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원고 주장의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다선

별지